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4가단7770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7. 25.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1,428,572원, 선정자 C, D에게 각 1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4. 4. 15.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4. 15., 이자 월 100만 원(이율 연 24%)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E는 2016. 10. 28. 사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는 E의 배우자, 선정자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E가 소외 회사에 5,000만 원을 대여할 때, 소외 회사의 E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선정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의 지위에서 소외 회사의 E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영

별지